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협의회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‘한국대학교육협의회’와 ‘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협의회’(ACEC)는 양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동의 폭을 넓히며,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<기초교양교육센터>에 다음과 같이 동참하여 대학의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각서는 ‘한국대학교육협의회’와 ‘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협의회’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의 <기초교양교육센터>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수행하는데 있어 상호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.

1. 교양교육을 포함한 학부교육과정 개발 및 공유와 확산
2. 교양교육 및 학부교육과정 컨설팅
3. 교양교육 및 학부교육과정 교수자 교육 및 연수
4. 세미나, 워크숍 등 공동 개최
5. 교양교육을 포함한 학부교육과정 개선 연구 및 연구결과 확산
6.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

제4조(비밀 엄수) 본 각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재정) 양 기관의 협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협력 내용에 따라 적절히 분담하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 기간) 이 각서의 유효기간은 기초교양교육센터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.

제7조(각서 내용의 변경)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 실행 사항) 본 각서 제3조에 명시된 협력분야의 세부 실행 사항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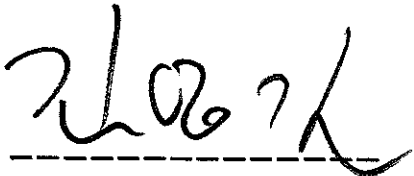
제9조(효력 발생) 이 각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양 기관은 이 각서에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0조(기타) 본 각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1년 3월 23일

한국대학교육협의회

회장 김 영 길



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

협의회 회장 김 영 길

